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15.6.11.(목), 자립지원과>

1. 기본 방향

- 희망키움통장 I 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계층을, 희망키움통장 II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통장 1·2 운영 기준 >

종류	가입 대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소득 하한선)	탈수급 기준
통장 I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통장 II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

* 희망키움통장 II는 타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15.12월 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16.1월부터 위 기준대로 운영됨

** 단,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로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① 희망키움통장 I : 상세 개정내용은 붙임 참조

-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자활특례 수급가구)
-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탈수급 기준)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격 모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지원 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으로 인정
 - * (예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가구원이 변동하는 등 생계·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된 경우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행특례 제도 폐지로 인해 희망 키움통장 가입 후 탈수급한 경우에는 각 급여기준에 부합할 경우 주거·교육급여 지급(의료급여는 미지급)
- (통장유지 기준)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희망키움통장 II: 현행과 동일, 상세 개정내용은 ' 16년 지침 개정 시 시달 예정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12월까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는 가입 가능
 - * '16.1월부터 가입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변경 예정이므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나, 기준 중위소득은 50% 이하인 경우는 '16.1월부터 가입 가능
-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통장유지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③ 내일키움통장: 상세 개정내용은 '16년 지침 개정 시 시달예정

○ 주요 개정사항 없음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통장 별 비교>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	일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 0.3)매칭 지원)
추가 지원액	-	-	내일키움수익금 등 (월 평균 4.8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탈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900만원 적립
지원 규모	'14년 3.2만가구(누적) '14년 10월 현재 5천가구 신규 가입	'14년 18천가구 '14년 10월 현재 9천가구 신규 가입	'14년 3천가구 '14년 10월 현재 2천가구 신규 가입

3. 적용시기

○ '15년 하반기(제3차, 8월 모집 시) 적용

○ '16년 주요 개정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16.3월 1차 모집부터 적용)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희망키움통장 지침 개정내용('15년 하반기 적용)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추진배경(p19)	☞ 일하는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I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지원대상(p20)	① (소득요건)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우선 가입 유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u>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장려금 수급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서 제외(지자체 개별 처리)</u>	①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u>기준 중위소득의 40%(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60% 이상인</u> 가구 *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우선 가입 유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u>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u>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과 자활장려금은 선택 수급가능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명확화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 <u>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장려금 수급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서 제외(지자체 개별 처리)</u>		
지원대상(p20)	②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u><신 설></u> ③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u>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u>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u>최저 생계비의 150%</u>,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u>최저생계비의 150% 이하</u> ④ 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 사업의 혜택이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를 말함	②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자활특례, 이행특례의 경우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82p~91p에 따라 기존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신규 특례 진입가구 없음) ③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존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u>소득상한*</u>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u>중위소득의 60%</u>,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u>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u> ④ 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하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 ※ 단,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문구 명확화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단,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지원기준 (p21)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70,369	630,629	815,813	1,000,997	1,186,182	1,371,36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10,000	357,000	462,000	567,000	567,000			567,000
		既('10~'12년) 가입가구	259,000	441,000	571,000	701,000	830,000			960,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 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단, 既('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 유지(장려율 1.05, 가구 상한 없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 탈수급 후 통장 유지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 확인을 위해 3월마다 1회 소득신고 필요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기준 중위소득의 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374,961	638,447	825,927	1,013,408	1,200,888	1,388,369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12,000	362,000	468,000	574,000	574,000	574,000			
	既('10~'12년) 가입가구	262,000	447,000	578,000	718,000	718,000	718,000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2,064,818	2,064,818	2,064,818	2,533,520	3,002,221	3,470,922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 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 유지(장려율 1.05, 가구 상한 없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 소득상한 초과 후 통장 유지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 확인을 위해 3월마다 1회 소득신고 필요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지 원 개 요 (p21~22)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u><신 설></u>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탈수급 개념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최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을 탈수급으로 인정 * (예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가구원 변동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등 - 자활특례·이행특례 등으로 가입한 경우는 특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으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문구 명확화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① 매월 본인 저축 (월 10만원 적금상품) ↓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기준) ↓ ③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 통장 I, 차상위 대상 통장 II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① 매월 본인 저축 (월 10만원 적금상품) ↓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기준) ↓ ③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희망키움통장 I, II 가입자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I, II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근로소득장려금 생성(p23)	$\text{근로소득장려금} = [\text{가구 총 소득} - (\text{최저생계비} \times 0.6)] \times 0.85 (\text{장려율})$ ① 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 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할 것	$\text{근로소득장려금} = [\text{가구 총 소득} - (\text{중위소득} 40\% \times 0.6)] \times 0.85 (\text{장려율})$ ① 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 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할 것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예) 일하는 수급가구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p24)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 중 소득이 <u>최저생계비를 넘은 경우</u>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가구의 <u>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u> 산정하되, '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既('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u>최저생계비 기준으로</u>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u>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u>. 다만,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u>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u>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u>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u> 산정됨 (예) '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17,281 - (617,281 \times 0.6)] \times 0.85 = 209,876\text{원} \rightarrow$ (반올림시) 210,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39,532원(= 2, 3인 가구와 동일)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 중 소득이 <u>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u>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u>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u> 산정하되, '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既('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u>기준 중위소득의 40% 기준으로</u>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u>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u>. 다만,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u>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u>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u>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u> 산정됨 (예) '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24,935 - (624,935 \times 0.6)] \times 0.85 = 212,478\text{원} \rightarrow$ (반올림시) 212,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u>2,064,818원</u>(= 2, 3인 가구와 동일)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지원내역 (P25)	5 지원내역(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예시) < 2015년도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table><tr><td rowspan="2">① 평균 지원 액</td><td>3인 가구 (월소득 116만원)</td><td>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원 ⇒ 3년간 약 1,400만원</td></tr><tr><td>4인 가구 (월소득 144만원)</td><td>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 = 월 47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td></tr><tr><td rowspan="2">② 최대 지원 액</td><td>3인 가구</td><td>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6 = 월 56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td></tr><tr><td>4인 가구</td><td>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 = 월 67만원 ⇒ 3년간 약 2,400만원</td></tr></table>	① 평균 지원 액	3인 가구 (월소득 116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원 ⇒ 3년간 약 1,4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44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 = 월 47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② 최대 지원 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6 = 월 56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 = 월 67만원 ⇒ 3년간 약 2,400만원	5 지원내역(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예시) < 2015년도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table><tr><td rowspan="2">① 평균 지원 액</td><td>3인 가구 (월소득 116만원)</td><td>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원 ⇒ 3년간 약 1,400만원</td></tr><tr><td>4인 가구 (월소득 144만원)</td><td>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 = 월 47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td></tr><tr><td rowspan="2">② 최대 지원 액</td><td>3인 가구</td><td>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7 = 월 57만원 ⇒ 3년간 약 2,052만원</td></tr><tr><td>4인 가구</td><td>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 = 월 67만원 ⇒ 3년간 약 2,952만원</td></tr></table>	① 평균 지원 액	3인 가구 (월소득 116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원 ⇒ 3년간 약 1,4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44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 = 월 47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② 최대 지원 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7 = 월 57만원 ⇒ 3년간 약 2,052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 = 월 67만원 ⇒ 3년간 약 2,952만원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① 평균 지원 액	3인 가구 (월소득 116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원 ⇒ 3년간 약 1,4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44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 = 월 47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② 최대 지원 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6 = 월 56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 = 월 67만원 ⇒ 3년간 약 2,400만원																						
① 평균 지원 액	3인 가구 (월소득 116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원 ⇒ 3년간 약 1,4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44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 = 월 47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② 최대 지원 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7 = 월 57만원 ⇒ 3년간 약 2,052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 = 월 67만원 ⇒ 3년간 약 2,952만원																						
적립 및 해지 요건 (P26)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204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약 206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 기존 소득상한 미적용 가구('12년 이전 희망리본사업 참여기간 중 취·창업하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가구)는 통장 만기까지 적용 ▶ 탈수급 후 해지 시 적립된 금액 전액(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민간매칭금) 지급 후 해지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 1회(15일까지) 제출받아 확인.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table><tr><th>구분</th><th>해지사유</th></tr><tr><td rowspan="2">지급 해지</td><td>●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td></tr><tr><td>●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15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td></tr><tr><td>지급요건 미충족 해지</td><td>●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td></tr></table>	구분	해지사유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15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기존 소득상한 미적용 가구('12년 이전 희망리본사업 참여기간 중 취·창업하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가구)는 통장 만기까지 적용 ▶ 탈수급 후 해지 시 적립된 금액 전액(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민간매칭금) 지급 후 해지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 1회(15일까지) 제출받아 확인.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table><tr><th>구분</th><th>해지사유</th></tr><tr><td rowspan="2">지급 해지</td><td>●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td></tr><tr><td>●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td></tr><tr><td>지급요건 미충족</td><td>●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td></tr></table>	구분	해지사유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지급요건 미충족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		
구분	해지사유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15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구분	해지사유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지급요건 미충족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환수 해지) -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5월 연속 미달 - 본인적립금 3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해지 (환수 해지) 급하지 못한 경우 -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5월 연속 미달 - 본인적립금 3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적립금 지원 (p.27)	㉔ 3년간 가입(본인적립금 적립, 정부지원금 지원) 후 탈수급 시(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①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이행급여 특례수급자가 된 경우와 ② 희망리본사업,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㉔ 3년간 가입(본인적립금 적립, 정부지원금 지원) 후 탈수급 시(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 이행급여 특례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 주태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지자체는 해지(철회)신청서와 적립금 지급요구서(사용관계 증빙서류* 및 증빙금액**) 접수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 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기존 '10~'13년 가입자의 경우 민간매칭금 포함한 금액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 주태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지자체는 해지(철회)신청서와 적립금 지급요구서(사용관계 증빙서류* 및 증빙금액**) 접수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 (증빙금액)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본인적립금 및 이자는 증빙 필요없음)		
적립금 지원 (p.29)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u>1천만 이하의 벌금</u>,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계좌개설 등 업무(p.32)	2 계좌 개설 등 업무 ①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는 하나은행(지점)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 하나은행 영업점 전담직원 지자체 방문 접수	2 계좌 개설 등 업무 ①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는 하나은행(지점)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 하나은행 영업점 전담직원 지자체 방문 접수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방문접수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③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및 시·군·구(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는 경우) 통해 신규 통장 개설 － 희망키움통장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 계좌개설 * 접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간 협의 하에 은행 직원이 특정 일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 가능(ex. ○월 ○일 09:00~12:00) * 은행직원이 아닌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 받을 경우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④ 수급자의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10만원) ⑤ 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 개설요청 등록(신규 지시) － 적립계좌는 탈수급 요건 미충족인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명의로 하며, 대상자명이	③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및 시·군·구(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담당자 대리접수 가능 － 희망키움통장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 계좌개설 * 접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간 협의 하에 은행 직원이 특정 일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 가능(ex. ○월 ○일 09:00~12:00) * 지자체 담당자 대리 접수 시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④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10만원) ⑤ 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 개설요청 등록(신규 지시) － 적립계좌는 환수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명의로 하며, 대상자명이 부기됨	불가 지자체 담당자 대리접수 가능 사실 명확화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부기됨 (예) 송파구청(홍길동), 송파구청(김철수)...	(예) 송파구청(홍길동), 송파구청(김철수)...		
저축결과 통보 및 적립금입금 업무 (P33)	① 매월 20일까지 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① 매월 20일까지 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에 적립금을 입금(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 매월 20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미입금자 독려 필요	강조 문구 추가	
정산 방법 안 내 (p.36)	2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 예시 (예시)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11.10월부터 '13.3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총 180만원 적립('11년도 30만원, '12년도 120만원, '13년도 30만원) 적립 ⇒ 통장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지자체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은? * (매칭비율) 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 •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자 10만원 국고환수시, ① 당해연도('13년) 30만원 ⇒ '13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하여 정산처리 ② 과년도('12년, '11년)는 매칭비율(8:1:1)에 따라,	2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 예시 (예시)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12.10월부터 '14.3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총 180만원 적립('12년도 30만원, '13년도 120만원, '14년도 30만원) 적립 ⇒ 통장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지자체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은? * (매칭비율) 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예시이며 지자체 실제 매칭비율에 따라 환수 처리) •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자 10만원 국고환수시, ① 당해연도('14년) 30만원 ⇒ '13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하여 정산처리 ② 과년도('13년, '12년)는 매칭비율(8:1:1)에 따라,	오류수정 및 연도 업데이트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 '12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11년도 30만원 ⇒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③ 발생이자도 매칭비율(8:1:1)에 따라, • 이자 10만원 ⇒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 연도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12년도 국고환수액 현황의 '발생이자'란에 기재 바람	• '12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11년도 30만원 ⇒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③ 발생이자도 매칭비율(8:1:1)에 따라, • 이자 10만원 ⇒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 연도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13년도 국고환수액 현황의 '발생이자'란에 기재 바람		
지원대상 (p.41)	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②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u>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I</u> 혜택자는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II 가입 허용	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②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u>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I</u> 혜택자는 탈수급(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II 가입 허용	차상위계층과 관련하여 '15.12월 까지 최저생계비 120% 기준 유지하되, '16.1월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 적용 * '15.12월까지의 가입대상 소득 상·하한 기준도 동일	
참고 1, 2, 3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는 별첨 참고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지원개요(p.45)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5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에 따라 적립기간(3~5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환수(적립요건 미충족)해지 (p.48)	④ <u>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u> - <u>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수급자 책정됨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이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공문으로 알림</u>	④ <u>사업참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u> - <u>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됨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이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공문으로 알림</u>		
지급해지 (p.49)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1일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예)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이 15년5월20일인 경우 3년1일되는 날은 18년5월20일이며 제출마지막 날은 18년11월19일 *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구 명확화	

구 분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해지사유 및 금리적용 현황 (p.50)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중도환수 해지 : · 반기별 소득·재산조사 실시하여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3월 미납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 본인 사망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중도환수 해지 : · 반기별 소득·재산조사 실시하여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3월 미납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 본인 사망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u>생계·의료</u>수급자 책정 시		

참고 1

<『희망키움통장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 가입 요건 확인 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월일	작성자 성명	(서명)
-----	-----	--------	------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 귀하는 <u>생계·의료</u> 수급자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2. 귀하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구분</th> <th>(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th> <th></th> <th>(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th> </tr> </thead> <tbody> <tr> <td>1인 가구</td> <td>432,097</td> <td>~</td> <td>740,737</td> </tr> <tr> <td>2인 가구</td> <td>735,734</td> <td>~</td> <td>1,261,258</td> </tr> <tr> <td>3인 가구</td> <td>951,782</td> <td>~</td> <td>1,631,626</td> </tr> <tr> <td>4인 가구</td> <td>1,167,830</td> <td>~</td> <td>2,001,995</td> </tr> <tr> <td>5인 가구</td> <td>1,383,879</td> <td>~</td> <td>2,372,364</td> </tr> <tr> <td>6인 가구</td> <td>1,599,927</td> <td>~</td> <td>2,742,732</td> </tr> </tbody> </table>		가구구분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1인 가구	432,097	~	740,737	2인 가구	735,734	~	1,261,258	3인 가구	951,782	~	1,631,626	4인 가구	1,167,830	~	2,001,995	5인 가구	1,383,879	~	2,372,364	6인 가구	1,599,927	~	2,742,732
	가구구분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1인 가구		432,097	~	740,737																									
	2인 가구		735,734	~	1,261,258																									
	3인 가구		951,782	~	1,631,626																									
	4인 가구		1,167,830	~	2,001,995																									
5인 가구	1,383,879	~	2,372,364																											
6인 가구	1,599,927	~	2,742,732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3. 귀하는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근로경험 확인서’ 제출 확인	예, 아니오																													
4. 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5. 귀하는 차상위 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 적합 ☐ 부적합
-----	--	-----------	------	------	--

<『희망키움통장Ⅱ』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아래 필수 가입요건의 모든 항목과 일치 되는지 확인 한 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신청서를 받습니다.

구분	점 검 내 용				결과
필수 가입 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2.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예
	가구구분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1인 가구	432,097	~	740,737	
	2인 가구	735,734	~	1,261,258	
	3인 가구	951,782	~	1,631,626	
	4인 가구	1,167,830	~	2,001,995	
	5인 가구	1,383,879	~	2,372,364	
	6인 가구	1,599,927	~	2,742,732	
	3.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근로경험 확인서’ 제출 확인 /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4. 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예로 인정				예	
5. 차상위 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예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근 1년간 근로한 경험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414p)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18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 (중복참여 제한) 1회에 한해 인정(단, 가구분리의 경우 분리된 가구가 지원 요건 충족시 가입 인정)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중복 참여 제외
 ** 단,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 허용
 -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희망키움통장Ⅱ 심사표 상 가점 부여)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 1단계 : 가입 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 2단계 : 자가진단표의 작성결과 적합일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 자격확인을 위해 '근로경험확인서' 제출

< 희망키움통장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①·② 모두 충족 필요) 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②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 (근로상황) 최근 1년 간 근로한 경험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적격처리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한부모가족*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조항 적용 가능			☐ 적격 ☐ 부적격									
	가구특성 (20점)				<table><tr><td>구분</td><td>배점</td></tr><tr><td>충족</td><td>20</td></tr><tr><td>미충족</td><td>0</td></tr></table>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심사 기준	취업지원 참여 여부 (5점)	■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창업 했는지 여부			<table><tr><td>참여</td><td>5</td></tr><tr><td>미참여</td><td>0</td></tr></table>	참여	5	미참여	0					
	참여	5												
	미참여	0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15점)	■ 기초수급자 경험 여부 ■ 자가, 전·월세 등 자산 상황 등			<table><tr><td>높음</td><td>15</td></tr><tr><td>보통</td><td>10</td></tr><tr><td>낮음</td><td>5</td></tr></table>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10점)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재무 등 교육 참여 의지 등			<table><tr><td>우수</td><td>10</td></tr><tr><td>양호</td><td>8</td></tr><tr><td>보통</td><td>6</td></tr><tr><td>미흡</td><td>4</td></tr><tr><td>불량</td><td>2</td></tr></table>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저축지속 가능성 (20점)	■ 저축액 충당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이해도 ■ 활동능력 및 고용상태 : 나이, 건강, 현 고용상태의 지속성 등 ■ 가구 총 소득* 중 신청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한함			<table><tr><td>우수</td><td>20</td></tr><tr><td>양호</td><td>16</td></tr><tr><td>보통</td><td>12</td></tr><tr><td>미흡</td><td>8</td></tr><tr><td>불량</td><td>4</td></tr></table>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자립성공 가능성 (20점)	■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실현가능성 *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			<table><tr><td>우수</td><td>20</td></tr><tr><td>양호</td><td>16</td></tr><tr><td>보통</td><td>12</td></tr><tr><td>미흡</td><td>8</td></tr><tr><td>불량</td><td>4</td></tr></table>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기타평점 (10점)	■ 평가자 의견													
합계		* 심사결과 총점 7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가구특성, ②저축지속가능성, ③자립성공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